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17 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은혜·임종득

백종헌 • 박성민 • 박형수

김미애 · 김재섭 · 김선교

박대출 · 최은석 의위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·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 한 실정임.

최근 각종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 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 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 2 및 제92조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중 "의약품정보의"를 "의약품정보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처방 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되었는지 여부
- ③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항에 따라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「약사법」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제92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<u>의약품정보의</u> 확인) ①	제18조의2(<u>의약품정보 등의</u> 확인)
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	①
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	
「약사법」 제23조제4항에 따	
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	
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	
정보(이하 "의약품정보"라 한	
다)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	,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
	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
	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 오
	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
	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
	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
	거 투여되었는지 여부
<u>2.·3.</u> (생 략)	<u>3.·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	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항
	에 따라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
	인하려는 경우에는 「약사법」
	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

③ (생 략)

제9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·1의2. (생 략) <신 설>
- 2. ~ 8. (생략)
- ④ (생 략)

<u>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</u> 확인하여야 한다.
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92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
1의3.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나한 자

- 2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